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5
----------	-----

제출년월일 : 2010. 11.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과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 나.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당계급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별표 1)
-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대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다. 기본 ·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라.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마.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3. 근거법규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2010. 9. 20 ~ 10. 11(의견 없음)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단서 중 “구의회”를 “울산광역시중구의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휴직중인”을 “휴직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 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p> <p>-----</p> <p>-----</p> <p>-----.</p>
<p>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② ~ ③(생략)</p>	<p>제2조(적용범위)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항제2호-----.</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4조(임용자격) ①(현행과 같음)</p> <p>-----</p> <p>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p> <p>-----</p> <p>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p>
<p>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p>

현 행	개 정 안
	<p>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p> <p><u>1. 비서관 및 비서</u></p> <p><u>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u></p>
<p>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u>구의회</u>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②(생략)</p>	<p>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p> <p>-----</p> <p>----- <u>울산광역시중구의회</u> -----</p> <p>----- .</p> <p>②(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u>지체없이</u>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p> <p>-----</p> <p>----- .</p> <p>② -----</p> <p>-----</p> <p>----- <u>지체 없이</u> -----.</p> <p>③ 제2항에 따라 -----</p>

현 행	개 정 안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 ·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p> <p>-----</p> <p>-----</p> <p>-----</p> <p>-----</p> <p><u>반영하여야 한다.</u></p>
<신 설>	<p>제12조의 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p> <p>③ 임용권자는 제 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p>

(의안번호 795)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11. 11(목)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10. 11. 17(수)
- 라. 위원회 상정 : 2010. 11. 22(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전병수)

-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과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 나.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상당계급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별표 1)
-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대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다. 기본 ·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라.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마.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5.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6. 검토의견

-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과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등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이에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제3항에 별표로 상당계급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제2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대상 근거 마련과,
- 안 제8조의2에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기회 부여,
- 그리고 안 제12조의2에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